

제2장 기타 인격권 침해사례

제1절 초상권 침해사례

가. 인쇄·통신매체 대상 사례

사례 87

하숙집 전단지를 쳐다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72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국민일보(주)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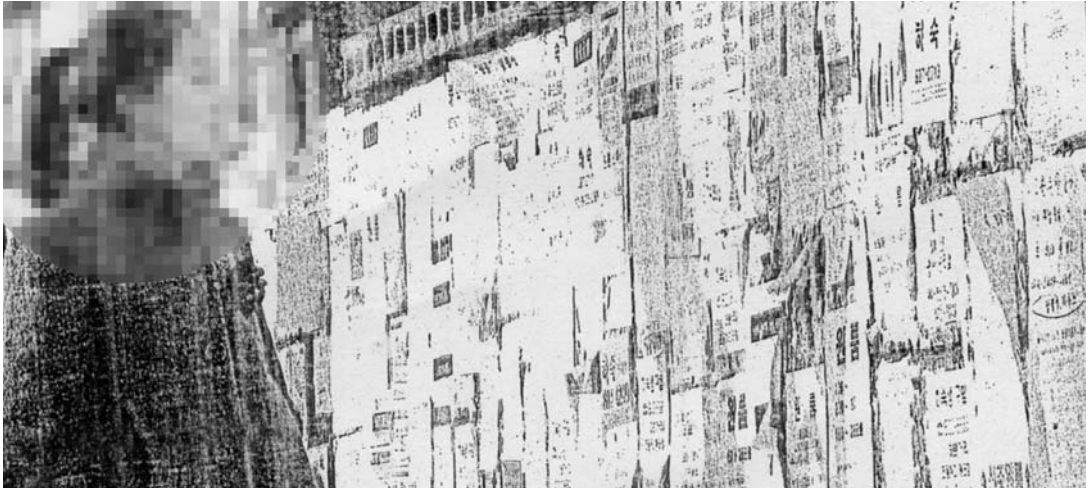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서울의 한 대학교 근처에서 어느 집의 담벼락을 바라보고 있던 신청인의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집은 많은데 갈 곳이 없네’라는 제목으로 “한 여학생이 담벼락을 가득 메운 하숙집 전단지를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기자가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 사진이 신문에 게재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초상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기사로 인해 신청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국민일보 : 『집은 많은데 갈곳이 없네』 제하의 사진 캡션 기사 (2010년 1월 16일자 8면)

내 용: 집은 많은데 갈곳이 없네...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 앞에서 15일 한 여학생이 담벼락을 가득 매운 하숙집 전단지들을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개학을 앞두고 대학이 원룸 임대료, 하숙비가 크게 올랐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백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보도 사진에 언급된 흑석동 길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면서 벽에 붙은 전단지를 보고 있던 여성이며, 피신청인은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중앙일간지입니다. 피신청인은 ‘집은 많은데 갈곳이 없네...’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 앞에서 15일 한 여학생이 담벼락을 가득 매운 하숙집 전단지를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상반신 사진을 게재하였고, 이 사진은 당일 밤 10시경 신청인이 삭제요청을 하기 전까지 16일 하루 동안 국민일보의 홈페이지 ‘쿠키뉴스’ 메인 화면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고, 이 사진이 신문에 게재된다는 것에 동의한 적 또한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현재 여학생의 신분이 아니고, 마을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담벼락을 구경하던 중이었으며,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눈을 찌푸린 것이지 ‘근심어린 표정으로’ 하숙집 전단지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중략)

신청인은 신청인의 초상과 사생활이 아무런 동의없이 공개돼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은 2010년 2월 12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2. 3.

사례 88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201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주)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2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교수와 여제자'라는 연극의 음란성 논란에 대해 다루면서 이 연극에 출연한 신청인의 누드사진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연극 공연 계약당시 기획사가 신청인의 초상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적은 있지만, 그 동意的 범위는 연극홍보에 필요한 통상적인 것일 뿐, 전라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게재하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으며, 이미 해당 계약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알몸 누드사진을 게재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이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했고, 신청인은 손배청구를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뉴스 : 『홀리당 끝까지...! 교수와 여제자 가 뭉기』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8일자)

내 용 :



신동립의 잡기노트 <156> = ‘공연 음란죄’라는 것이 있다. 공연(公演)이 아니라 공연(公然)이다. 공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면 벌을 받는다. 도도한 ‘표현의 자유’ 목소리 때문에 음란성 판정이 쉽지는 않다. 서울 대학로 한성아트홀에서 곧 공연 한 달을 맞이하는 ‘교수와 여제자’가 그렇다.

형법망이 성글다는 듯 미끄덩 빠져나오며 160석을 꽉 채우고 있다. 색을 입힌 홍등 같은 것이 없는 내추럴 조명일 뿐더러 야릇한 신음, 성 도구 따위도 배제했으므로 걸려들 구멍이 없다고 연출자는 강변한다.

1993~97년 당시 무려 36만 명이 봤다는 외설극 ‘마지막 시도’ 덕 혹은 탓에 터득한 노하우를 적용했다. 오픈 런. 무기한 룰런이 가능한 ‘마지막 시도’가 당국의 개입으로 무산됐으며 땅을 친다. 그는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교수와 여제자’의 형식은 틀림없는 연극이다. 그런데 관객층은 여느 연극과 사뭇 다르다. “연극이라는 것을 난생 처음 보는데, 그게 바로 이거”라는 남녀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3만원짜리 입장권은 곧 붉은 의미의 면죄부다. 성인업소의 ‘홀딱쇼’가 아니라 소극장의 엄연한 ‘무대예술’ 감상이라는 포장지를 방패 삼았다.

‘피어나기 전인 유소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시들어가는 노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오직 우리 청춘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코앞에서 꿈틀댄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교수와 여제자>라는 연극에 출연했던 연기자이며, 피신청인은 뉴스를 보도하는 통신사입니다. 피신청인은 1월 22일 “홀라당 끝각... 교수와 여제자가 뭐기에”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의 누드 사진을 신청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연극 공연 계약 당시, 기획사가 신청인의 초상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 동의의 범위는 연극 홍보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며 전라의 사진을 제공, 게재하는 것까지 동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계약의 효력은 신청인이 출연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각서에 서명 날인한 12월 20일자로 소멸되었으므로, 12월 20일 이후에 신청인의 초상권은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인의 알몸 누드사진을 공개하여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연극 출연 당시 노출의 수위가 이토록 심할 줄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기획사 측에서도 알몸 사진이 기록으로 남을 일은 없다며 안심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약속과 달리 노출의 수위가 점점 심해졌고, 계속해서 노출과 외설에 초점을 맞춰 홍보했습니다. 신청인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탓에 입원을 하기도 했으며, 결국 연극 출연을 포기하고 중도하차 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알몸 사진을 공개함으로 인해 겪었던 괴로움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후략)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조정대상보도 삭제



백화점에서 쇼핑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361 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 ○

피신청인 : (주)동아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0. 9. 2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서울 성북구 길음동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5만 원대 상품을 파는 매장에 고객들이 붐비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백화점 판매대에서 물건을 구경중인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했다.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은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신문에 게재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신을 담은 사진을 게재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십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동아일보 : 『소비패턴 바꾸는 5만원권』 제하의 사진 캡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B3면)

내 용 :



발행된 지 15개월째를 맞는 5만원권이 백화점 1층 행사장에서 유독 많이 눈에 띄고 있다. 추석 연휴를 3

일 앞둔 18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도 5만원대 상품을 파는 매장이 고객들로 붐볐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백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보도 사진에 언급된, 백화점 판매대에서 물건을 구경중인 여성이며, 피신청인은 동아일보입니다. 피신청인은 『소비패턴 바꾸는 5만원권』 제하의 기사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던 신청인의 전신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고, 이 사진이 신문에 게재된다는 것에 동의한 적 또한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 신청인의 동의도 없이 제 얼굴을 몰래 촬영하고, 또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 생각합니다.

이 기사로 인해 지인들로부터 “백화점에서 장보게 돈 많은가 보다”부터 시작해 “백화점에서 장보다 딱 걸렸다” 등 이런저런 이야기로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으로 인해 심사가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신청인은 신청인 개인의 초상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정신적인 피해가 생긴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0년 10월 31일까지 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10. 8.



신청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보도해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532 손해청구

신 청 인 : 신 ○ ○

피신청인 : (주)아시아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11. 2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시작된 날 아침 서울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두터운 목도리와 점퍼로 중무장을 하고 잔뜩 움츠린 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신문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도 없고, 위 사진기사로 직장에서 놀림감이 되고 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십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아시아투데이 : 『**춡다 추워**』 제하의 사진 캡션 기사 (2010년 11월 26일자 8면)

내 용 : 서울 영하 3도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출근길 시민들이 두터운 목도리와 점퍼로 중무장하고 잔뜩 움츠린 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회사동료를 통해 아시아투데이신문에 신청인의 사진이 게재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사진이 촬영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 의 얼굴을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크게 실었습니다. 심지어 모자이크 처리조차 하지 않았습니 다. 이는 명백한 초상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사로 회사에서 놀림감이 되었으며 수치심 을 느꼈습니다. 신청인은 이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 청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0년 12월 23일까지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 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시한다.

「본지는 지난 11월 26일 ‘줍다 추워’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내보내 본의 아 니게 피해를 입혀드렸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다하여 국민의 인 격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도내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본지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 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12. 9.



휘발유값 폭등 관련 보도에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590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 ○ ○

피신청인 : (주)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0. 12. 2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주유소의 휘발유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이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을 당시 사진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했고, 이 사진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도 없으며, 이 사진이 이를 전송받은 각종 언론매체에 게재되어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을 지급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연합뉴스 : 『주유소 휘발유값 '고공행진' 계속』 제하의 사진 캡션 기사 (2010년 12월 19일자)

내 용 : 지난주 2년 4개월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번 주 또 올랐다. 지난 1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무연 보통 휘발유의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27.0원 오른 1,767.6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주유소의 모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백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보도 사진에 주유소 앞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장면이 보도된 당사자이며 피신청인은 뉴스 통신사입니다.

피신청인 ‘휘발유값 고공행진’ 제하의 보도에서 휘발유값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유소에서 근무 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아무런 동의와 고지 없이 촬영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을 촬영하는 것도 몰랐으며 다음 날 지인의 연락을 통해 신청인이 신문에 보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청인의 사진이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합뉴스의 촬영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진은 데일리포커스 및 동아일보 등에도 보도가 되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발견하지 못한 다른 언론 매체와 인터넷 등에도 신청인의 사진이 공개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다른 지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연락이 올 것이 두렵기도 하고 신청인의 사진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이 몹시 걱정이 되고 불쾌합니다. 신청인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보도를 한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금 1백만 원 지급



나. 방송매체 대상 사례

사례 92

대리주차 요원들이 고객 차량을 뒤킨다는 내용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초상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50·51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문화방송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발레파킹을 하는 대리주차 요원들이 고객이 맡긴 차량을 자기 차처럼 드나 들고 음식까지 먹는 듯하며 차량 내부를 뒤킨다고 한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방송화면에 나온 그랜저XG 차량은 자신의 차량으로 보도내용은 신청인과 무관하다며 정정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에게 사과하는 서신을 보내기로 함과 동시에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 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 보도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황당한 대리주차' 제하의 보도 (2010년 1월 6일 18:50)

내 용 :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라는 대리주차 서비스. 대리주차 서비스요원들의 서비스 정신은 어떨까 유심히 살펴봤다. 소비자가 맡긴 차량을 자기 차처럼 이용한다. 끊임없이 드나들다 못해, 음식까지 먹는 듯 했다. 그리고 이 분은 대체 손님 차안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 거냐?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imbc 홈페이지(www.imbc.com)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1일간 게재 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

다. 또한 원 조정대상보도 (“황당한 대리주차”)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황당한 대리주차’ 관련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6일 “황당한 대리주차”라는 제목으로 대리주차요원들이 손님의 차량에서 음식물을 먹고 내부를 뒤흠리는 등의 행태가 벌어진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보도된 차량은 대리주차 요원 본인의 차량이었으며, 손님의 차량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내부를 뒤흠린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은 2010년 1월 15일까지 문화방송 시사교양국장 명의(자필서명 포함)로 된 서신을 신청인에게 송부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2. 내 용 : MBC 불만제로는 지난 1월 6일 발레파킹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대리주차 요원들이 손님의 차량 내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방송된 그랜저XG 차량은 손님의 차량이 아닌 김○○ 씨의 차량이며, 손님의 차량에서 음식을 취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내용으로 인해 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본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3. 피신청인은 2010년 1월 22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1. 13.



사례 93

비공개를 전제로 대리주차 피해사례를 제보했으나 신청인의 실명과 초상 등이 그대로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54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문화방송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발레파킹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를 제보한 신청인의 실명과 초상을 방송했다
- 이에 신청인은 익명처리를 전제로 피신청인의 인터뷰에 응했으며, 촬영 후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의 실명과 초상이 그대로 공표되었다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에게 사과하는 서신을 보내기로 함과 동시에 2백5십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항당한 대리주차' 제하의 보도 (2010년 1월 6일 18:50)

내 용 : 이○○ 제보자 : 이것도 제가 몰랐는데 굵힌 거예요. 되게 크죠?

이○○ 제보자 : 선택이 아니예요. 발레(대리주차)는. 제가 선택을 할 수 없어서 그게 좀 불편하다면 불편하고...

이○○ 제보자 : 버젓이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발레를 강제로 해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를 해놓고도, 나중에 차 열쇠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그거 빼주면서 또 발레비를 받고.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대리주차에 피해 사례가 있다고 인터뷰한 인터뷰 대상자이며, 피신청인은 뉴스를 보도하는 중앙방송사입니다.

피신청인은 인터뷰를 요청할 때 모자이크 처리를 약속했으나, 인터뷰 촬영 직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인은 모자이크 처리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한 것이며, 'TV에 보도되는 것이 정말 싫다', '가명을 쓰면 더 좋다',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한다', '이는 사람 통해서 들어온 인터뷰라 거절을 못한 것뿐, 인터뷰 하고 싶지도 않다'는 내용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촬영 장소에서 담당 피디는 가명으로 처리한다며 모자이크 처리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은 채 헤어졌습니다. 촬영 후 모자이크 처리가 안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신청인을 섭외한 방송작가에게 모자이크 처리를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심지어 클로즈업 된 상태로 실명까지 그대로 방영됐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010년 1월 29일까지 금 2,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시한다.

「MBC 불만제로는 지난 1월 6일 발레파킹의 문제점에 대한 신청인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과 실명을 동의 없이 내보낸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대리주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였으나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혀드렸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다하여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도내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본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게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1. 14.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업체의 창고와 소속 직원의 초상을 내보냈으나 적발된 바 없다.

사 건 : 2010제주조정1·2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윤 ○ ○

2. (주)아시아포럼

피신청인 : JIBS제주방송(주)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10. 1. 2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킨 업체가 적발되었다고 방송하면서 제주 시 ○○동 소재의 신청인 업체와 그 직원의 모습을 배경화면으로 내보냈다.
- 이에 신청인들은 단속 당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5천만 원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JIBS: 「JIBS 아침뉴스」 프로그램 '중국산 옥돔 불법유통'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21일 07:15)

내 용 : ▷앵커 : 가짜 흑돼지에 이어서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팔아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벌금만 내면 될 정도로 처벌의 수위가 낮아서 한 차례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짜 제주산 옥돔을 팔아온 업체도 있었습니다. 고○○ 기자입니다.

▷기자 : 단속반이 수산물 보관창고를 급습합니다. 상자를 열자 옥돔 등 수산물이 가득합니다. 모두 중국산입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선 대부분 수산물이 제주산으로 둔갑했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것입니다. 수산물 품질 검사원이 적발한 양만 옥돔 등 1억 6천만 원어치나 됩니다. 하지만 수산물품질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 5천6백만 원만 내면 그만이라 수산물 불법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2년전 수산물 무허가 판매로 단속됐던 서귀포시 성산읍의 모 수산물 업체가 최근 또 같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 해경의 조사 결과 이 업체 대표 마흔 여덟살 강 모 씨는 적발 후에도 계속 무허가 영업을 벌여 1천7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 해경은 또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6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55살 강 모 씨도 붙잡았습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JIBS <아침뉴스>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0월 20일 저녁종합뉴스와 10월 21일 아침뉴스에서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킨 업체가 적발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주식회사 아시아포럼의 수산물 보관 창고 및 직원의 모습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표기로 인해 적발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나. **내 용** : 지난해 10월 20일 저녁종합뉴스에서 방송한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팔아온

업체 관련 보도에서 제주시 건입동 소재 업체와 그 직원의 모습은 단순한 자료 화면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당 업체는 당시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1월 28일에 JIBS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의 말미에서 화면 좌측 하단에 통상의 뉴스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배경화면으로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업체의 수산물 보관창고와 그 직원이 등장하는 화면을 인용한 후, 위 보도문 내용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한다.

3.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들에게 각각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위 2.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1. 28.



사례 95

최근 대게 불법 포획이 심각하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대구조정2 손배청구
 신 청 인 : 남 ○ ○
 피신청인 : 포항문화방송(주) (포항MBC-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10. 3. 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대게자원의 고갈은 불법어획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게 불법조업 중인 어선에 대해 어업지도선이 단속중인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
- 이에 대해 당시 선원으로 조업에 참여했던 신청인은 2008년 3월 불법조업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 또 다시 방송되어 초상권침해를 받았으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백5십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포항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선상 결사 항전'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일 21:00)

내 용 : ▷앵커 : 포항MBC 뉴스데스크는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아 불법 어획 실태와 대게 자원 육성 방안을 심층 취재해, 오늘부터 연속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대게 어획량 감소의 주범인 불법 대게 잡이 현장을 장○○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 해상 단속반이 암컷대게잡이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결사적으로 저항합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백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피신청인은 해상 단속반이 암컷 대게잡이 어선을 적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없이 방송하여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은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일터에 나가지도 못해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250만원을 2010. 4. 26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신청인은 향후 이사건 관련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이 1항의 손해배상금이 신청인에게 2010. 4. 26까지 지급되지 않을 시 연10%의 이자가 가산되어 지급된다.

2010. 3. 12.



사례 96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없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466 손해청구

신 청 인 : 신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0. 3. 1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중고품을 매매하는 '벼룩시장'에 나와 연두색 모자를 쓴 채 물건을 고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촬영 당시 방송에 자신의 모습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피신청인 측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방송 당일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방영되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BS-2TV : 「무한지대 큐」 프로그램 '벼룩시장' 편 (2010년 3월 10일 19:20)

내 용 : ▷진행자 :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런 시장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텐데 말예요.

▷내레이터 : 외면받고 소외받는 중고품이여 더 이상 서러워마라 지금은 바야흐로 중고품이 대세.

▷손님 : 하나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열 개를 살 수 있어요.

▷내레이터 : 고물가시대 치솟는 몸값 벼룩시장이 뜨고있다. 2010 벼룩시장 속으로 이른 아침 서울의 한 구청앞 (중략)

▷내레이터 : 웰컴투 벼룩. 이제 벼룩시장도 세계화시대.

▷외국인 상인 : 필리핀에 가기위해서 물건을 팔아요. (녹색모자를 쓴 신청인의 모습 반복적으로 보여짐)

▷손님 : 8천원?

▷외국인 상인 : 만, 만(원)

▷내레이터 : 낙찰가는 9천원 되겠다.

▷손님 : 팽잡았어요.

▷내레이터 : 사는 사람은 저렴한 가격에 황재. 파는 사람은 두툼한 지갑에 어머니 행복하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 이유

3월 10일에 방송된 KBS-2TV <무한지대큐> 벼룩시장편에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인의 얼굴이 무단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2일 서초동 벼룩시장에 무한지대 스티커가 붙은 카메라를 든 두 분이 촬영을 하고 다녔고 그것을 인지한 신청인은 피해다니기는 했지만 신청인을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서 중단해 달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신청인 옆자리에 외국인이 있었고 그 외국인과 학생들을 인터뷰하며 촬영을 하고 있었기에 신청인은 나름 피한다고는 했는데 걱정이 되어서 집에 와서 KBS 고객센터로 전화해 사정을 말하며 신청인이 흑시라도 촬영된 부분이 있다면 삭제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월 10일 방송분에서는 정말 TV를 보는 신청인의 얼굴이 낮 뜨거울 정도로 길게 나왔고 신청인이 카메라를 의식해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인의 초상이 공개되어 정신적인 피해가 생긴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2010년 3월 26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3. 19.



사례 97

베트남 보신관광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유리컵 속에 든 곰의 쓸개즙을 보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410 손해청구

신 청 인 : 소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0. 10. 20.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베트남에 여행을 간 한국인들이 마취상태의 곰으로부터 채취한, 안전이 의심스러운 쓸개즙을 구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유리컵 속에 든 쓸개즙을 보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곰농장 방문은 여행 패키지 상품의 일정에 따른 것으로 자신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는 장면을 보고 경악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고발 프로그램에 자신의 초상이 아무런 승낙도 없이 공표되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한편, 프로그램 총책임자(CP)가 신청인에게 사과서신을 발송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BS-1TV: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충격보고! 초저가 해외여행의 실체'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15일 23:05)

내 용 : (전략)

▷리포터: 베트남에서 한국 여행객들을 상대로 판매되고 있는 곰 쓸개즙. 좁은 우리안에 곰을 가둬다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바로 곰을 마취하고 쓸개즙을 채취합니다. 여행객들이 구입한 곰 쓸개즙, 과연 먹어도 안전한 것일까?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직장동료 7명과 함께 3박 5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여행을 갔다왔으며, 패키지 여행인지라 다른 팀의 관광객들과 같이 움직이거나 동석할 시간이 많았으며, 기타 여행지 외에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곰사육 농장을 방문했으며,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곰쓸개즙을 채취하는 장면에 놀랐으며, 이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런 소비자 고발 프로에 신청인의 초상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신청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본의 아닌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에 공식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은 2010년 11월 5일까지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총책임자(박○○ CP) 명의(자필서명 포함)로 된 서신을 신청인에게 송부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아 래 -

• 내 용 : 소비자고발은 지난 10월 15일 <충격보고! 초저가 해외여행의 실체> 편에서 동남아 여행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최근 횡행하고 있는 저가 패키지 여행의 폐해를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이와 같은 저가 여행 상품의 실체를 인식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제작진의 이와 같은 노력과 성의에도 불구하고, 짧은 제작 기간과 밤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 씨의 모습이 적절한 처리 없이 방송되어 여러모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제작진을 대표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고발 제작진은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소○○ 씨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피해구

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신청인의 해량을 바랍니다.

2. 피신청인은 2010. 11. 5. 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10. 27.



다. 인터넷매체 대상 사례

사례 98

용역회사 직원들이 이포보 고공 농성장을 방문한 천정배 의원을 막아섰다고 보도하면서 용역 경비원인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172 손배청구

신 청 인 : 허 ○ ○

피신청인 : (주)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0. 8. 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4대강 사업공사 여주 이포보 지역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환경운동단체들이 이포보를 건설하는 업체 측에 항의하고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과 함께 “천정배 의원이 이포보 고공 농성장을 방문하려 하자, 용역회사 직원들이 길을 막아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사진 속에서 용역회사 직원으로 언급된 신청인은 위 사진 속에 신청인의 초상이 그대로 노출되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5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과 함께 조정대상기사에 난 사진 속 신청인의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오마이뉴스 :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미안하고 면목없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일자)

내 용 : “당신들 뭐야! 저리 안 비켜!”

검은색 옷을 입은 건장한 청년들이 민주당 천정배 의원 앞을 가로막았다. 4대강 사업 공사 여주 이포보를 건설하는 대립산업 측이 고용한 용역회사 직원들이다. 천 의원은 호통을 쳤다.

하지만 용역회사 직원들은 시선만 피할 뿐 길을 열지 않았다. 이들 뒤로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고공 농

성을 벌이고 있는 이포보의 모습이 선명하다. 폭염에 땀이 줄줄 흐르는 천 의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거 몰라? 경찰도 아니면서 왜 이런 식으로 길을 막는 거야!”

전직 법무장관인 천 의원의 호통은 계속됐다. 용역직원들도 요지부동. 참다못해 천 의원은 용역회사 직원들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맨몸으로 뛰어들었다. 뒤이어 김희선 전 의원,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원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뛰어들었다. 반대편에서는 용역회사 직원들과 대림산업 관계자들이 이들의 농성장 진입을 필사적으로 저지했다.

고함과 신음소리 그리고 욕설로 여주 이포보 공사장 입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매마른 땅에서는 먼지가 뿌얇게 일었다. 바람 없는 땀별 아래서 한 바탕 몸싸움을 벌인 사람들의 입에서는 한숨이 터졌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그 위로 끈적거리는 땀이 줄줄 흘렀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진입한 8월 1일 오후, 4대강 사업 남한강 여주 이포보 공사 현장의 땀별 아래서는 이렇게 ‘혈투’가 계속 이어졌다.

이날 천 의원이 육탄으로 뛰어든 행위는 일종의 ‘보급투쟁’이다. 1일로 이포보 점거 농성은 11일째를 맞이했다. 남한강 수면에서 약 20여 미터 위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미 식량과 휴대전화 배터리 등이 바닥났다.

농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생필품을 전달할 수도 없다. 대림산업 관계자들과 경찰이 이들의 농성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고공 농성 지지방문을 온 천 의원 일행에게는 생필품 전달 ‘임무’가 주어졌다.

결국 천 의원과 김희선 전 의원 등은 한 바탕 몸싸움과 연좌 농성을 거쳐 농성자들에게 비상 식량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그렇다고 천 의원이 농성자들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다. 이들은 고공 농성장 아래까지만 진입했고, 생필품은 대림산업 측이 ‘대리’로 전달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백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오마이뉴스의 보도사진에서 초상권을 침해당한 용역 경비원이며, 피신청인은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입니다. 피신청인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미안하고 면목없다”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1일 이포보 고공 농성장을 방문하려 하자, 용역회사 직원들이 길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신청인의 얼굴이 완벽하게 드러난 사진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대로 오마이뉴스의 한 기사에 실어 올렸습니다. 신청인은 그에 대하여 초상권을 침해 받았고 현재도 계속해서 침해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원을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액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한은 2010년 8월 31일로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2010년 8월 20일까지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의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의 얼굴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2010년 8월 20일까지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조정기사에 대해서도 1항의 조치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2010. 8. 12.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1420 손배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주)헤럴드미디어 (헤럴드경제닷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0. 10. 2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우리나라 기후가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더위와 추위만을 오가는 2계절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면서 추위에 잔뜩 움츠린 채 지나가는 신청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이 촬영되는 데 동의한 적이 없고, 신문이나 포털 사이트 등에 신청인의 사진이 전제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도 없다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15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헤럴드경제닷컴 : 『“더 빨리, 더 빨리” 사라진 봄 가을 한국인의 기질을 바꾼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7일자)

내 용 : 느긋한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더위와 추위만을 오가는 2계절 환경이 되다 보니 안그래도 다급한 한국인의 성미가 더욱 급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4계절은 한국인 특유의 적응력과 강인함을 키웠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은 계절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졌고 한국인의 DNA에 각인돼 유전돼 왔다.

나른한 봄, 무더운 여름, 건조한 가을, 차가운 겨울 등 4계절은 절기의 특성에 따라 한국인의 오장육부에 건강한 자극을 주고 장기들이 적응하고 제기능을 하면서 강인함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해 줬다.

그러나 봄과 가을이 실종된 채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추웠다가도 어느날 느닷없이 더워지면서

우리 몸에는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좋지 못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숙행 고대구로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세로토닌 같은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이 계절의 이상 변화로 분비가 불규칙해지면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등 기후가 좋지 못한 지역에서 빈발하는 우울증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우리 몸이 계절 변화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적응해온 패턴이 깨지면서 수면장애나 위장기능 저하 등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호르몬 분비 이상의 영향으로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나 성격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백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 하단 사진 속 출근중인 여성이며, 피신청인은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피신청인은 “더 빨리, 더 빨리”, 사라진 봄 가을 한국인의 기질을 바꾼다? 제하의 보도에서 ‘서울 여의도 인근 시민들이 잔뜩 움츠린 채 출근하고 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진을 촬영하고 보도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진을 기사에 게재하였고 또한 각종 포털사이트에 전재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 기사를 포털사이트인 네이트 기사에서 보게 되었고, 동의하지도 않은 신청인의 사진이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 중 일부는 얼굴이 공개된 신청인에 대해 걱정을 하기도 하였으나 많은 네티즌들은 기사에 나온 신청인의 사진을 보고 조롱하

는 댓글을 달고 있었기에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앞으로도 여의도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해당 기사에는 그 사진이 어디에서 찍혔는지 까지 포함되어 있어 현재 일하는 회사동료들이 알아볼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상과 같은 피해를 입고 있어 신청인은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2010년 11월 20일로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0. 11. 4.



제2절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사례 100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경과 신청인 소유의 차량 번호를 동의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69 손해청구
 신청인 : ○○○
 피신청인 : (주)씨유미디어 (Comedy TV)
 중재부 : 서울제7중재부
 접수일 : 2010. 1. 8.

사건개요

- 피신청인 C&M케이블 유선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매일 집을 나가서 돌아오는 강아지가 알고 보니 남자친구인 동네 개(신청인 소유의 진돗개)를 만나고 온다' 는 내용의 SBS-TV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재방영했다.
- 신청인은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경과 소유차량의 번호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방영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는 SBS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방송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방송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관련 기관의 심의필을 완료하여 방송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심리결과 당사자간에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담당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Comedy TV : 「TV 동물농장」 프로그램 '다래의 기출' 편 (2010년 1월 3일 11:40)

내 용 : ▷내레이션 :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도록 몸을 피하는 제작진, 그러자 잠시 주춤하던 다래가 주변을 뱅 돌아 향한 곳은, 바로 백구가 있는 곳. 놀랍게도 그 사납던 백구가 너무나도 상냥하게 꼬리를 흔들며 다래를 반긴다. 야 이녀석들 한두번 만난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개주인 : 다래가 외로운가 봐요.

▷내레이션 : 방년 네 살, 한창 사랑이 싹틀 나이. 다래는 백구와 남모를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인 속을 까맣게 태워가며, 가출을 일삼았던 이유가 지편엔 사랑때문이었다니, 참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

▷개주인 : 남자친구 만나러 여기까지 왔네.

▷내레이션 : 아이구, 매일같이 보고도 그렇게 좋은지.. 철조망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기세다.

▷개주인 : 앞으로 그러면 다래 없어지면 여기로 와봐야지. 1순위로 와봐야지.

▷내레이션 : 아휴, 다래가 가는 곳을 알았으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는 가족들.

▷제작진 : 왜 몰래 만났을까요? 집에서 연애를 금지하시는 거 아닌가요?

▷개주인 : 그런거 아닌데... 다래야 많이 외로웠구나.

▷내레이션 : 불타는 마음도 모르고 무작정 매어둔 것이 미안해지는 모양이다.

▷개주인 : 사돈댁 아니야? 개사돈?

▷내레이션 : 예유, 뭐 이렇게 된 거 상견례 날이라도 잡아볼까 했더니... 가만, 안 계신가? 안타깝게도 백구의 주인은 부재중. 양가 허락은 다음으로 미뤄야 할 듯 하다. 어쨌든 온 가족의 축복아래 공개 데이트를 시작한 다래 탈출에 도둑 연애는 오늘로 끝 다래한테도 핑크빛 미래가 펼쳐지겠죠?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백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Comedy TV 채널에서 재방송된 SBS TV 동물농장 401화 프로그램 ‘다래의 가출’ 편에서 아래의 남친에 해당되는 강아지 ‘백구의 소유주’ 이자 ‘해당 주택의 거주자’이며 ‘주차된 자동차의 소유주’입니다. 피신청인은 TV 동물농장을 방영한 Comedy TV입니다.

피신청인은 2010년 1월 4일(월) 새벽 1시경에 C&M케이블 유선방송 Comedy TV 채널에서 매일 집을 가출했다 돌아오는 강아지가 알고보니 남자친구인 동네 개를 만나고 온다는 내용의 SBS TV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주인의 허락 없이 방영하였습니다.

당시 SBS TV의 본 방송은 보지 못하고 10개월이 지난 후에 아버지께서 Comedy TV에서 재방송하는 것을 우연히 보시게 되어 알게된 내용입니다.

방송 내용은 다래(허스키종)의 남자친구인 동네 개가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흰색 진돗개)로 집

마당 안에 풀어져 있는 개가 집주인의 허락없이 약 10분 남짓 방송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집 안 마당 구석구석 공중파 및 케이블에 방영되어 사생활 침해를 당했으며, 방송 내용을 보면 집 안 주차장 안까지 주인 허가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촬영을 하였고 집에 주차되어 있는 차 번호가 아무런 모자이크나 스모그처리 없이 뚜렷하게 2~3차례 노출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방송상에는 초인종을 눌러보고 집주인이 없다는 식으로 방송이 되었는데, 정확히 촬영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차가 주차된 정황상 집에 사람이 없진 않았을 것이며 방송에서도 보이듯 초인종에 포스트잇으로 핸드폰 번호를 적어두었음에도 연락을 소홀히 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중략)

신청인은 이 보도로 인하여 보호 받아야할 사생활이 침해되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물질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SBS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방송한 것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관련 기관의 심의필을 완료하여 방송한 것이므로 방송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 

탈북자인 신청인의 신원을 자세하게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916 손배청구
 신 청 인 : 양 ○ ○
 피신청인 : (주)조선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0. 5. 2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지난 2007년 탈북한 한 소년이 부모 없이도 한국생활에 잘 적응해가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이 소년이 지난 2006년 한국에 온 국군포로 출신의 탈북자인 신청인의 손자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에서 신청인의 실명을 비롯, 한국의 학교에 재학중인 신청인 손자의 이름, 다니는 학교명 및 학년 등과 함께 신청인 가족이 북한에서 겪었던 과거사 등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신청인의 신원이 북한 당국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에 두고 온 신청인의 나머지 가족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어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1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조선일보 : 『탈북소년 ○○이 “올해는 외롭지 않아요”』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6일자 A13면)

내 용 : 국군포로 양○○ 씨 손자 / 부모없는 어린이날 3년째 / 친구 가족과 신나는 하루

5일 오후 4시쯤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서울○○초등학교 6학년 양○○(12)군이 같은 학교 친구 백○○(12)군과 함께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2007년에 탈북한 양군이 이렇게 어린이날 나들이를 하기는 처음이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부모가 없어 쓸쓸하게 어린이날을 보냈다. 하지만 올해는 친구 백군 가족의 초대로 함께 어울리며 어린이날다운 하루를 보냈다. 백군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 점심을 먹고 공원에 나와 지칠 때까지 놀았다. 백군 어머니 박○○(39) 씨는 “○○이는 꾸밈이 없는 아이”라며 양군 머리를 쓰다듬었다.

양군은 지난 2006년 한국에 온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 양○○(78) 씨의 손자다. 양군 가족은 2003년에도 탈북했지만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에 잡혀 6개월간 감옥생활을 했다. 양군은 “부모님은 그때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던 동생은 행방불명됐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양군은 할아버지보다 1년 늦게 홀로 두만강을 건넜다. 양군은 “겨울에 두만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벌벌 떨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양군은 올해 학급회장을 맡을 정도로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학급회장 선거 구호가 ‘놀 때는 화끈하게 놀고 공부할 때는 반을 조용히 만들자’ 였다. 담임교사 김○○(42) 씨는 “사정을 들을 때까지 북한 출신인 줄 몰랐다. 의젓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이라고 했다. 양군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한다. 4월 학교 운동회에서는 이어달리기 반대표로 뛰었다. 양군은 “수학은 시험 보면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린다”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런 양군을 보는 할아버지는 대견하기만 하다. 양○○ 씨는 “부모도 없는데 밝게 자라고 있어 그저 고마울 뿐”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한국전쟁당시 포로가 되어 북한에서 갖은 탄압을 받으며 탄광에서 살다가 2007년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당시 3남3녀의 자식들이 있었으나 만아들 내외는 2003년 신청인과 함께 온가족이 한국으로 오려다 중국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북송되어 총살당하고 신청인과 가족들은 북한보위부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보위부의 감시 때문에 함께 오지 못한 아내와 4명의 자식들, 손자들이 있습니다. 두고 온 자식 때문에 신청인과 함께 온 1명의 아들 그리고 총살당한 만아들 자식인 손자는 북한에 두고온 가족들에게 누가 미칠까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군포로가 없어졌지만 물증이 정확치않아 가족들을 감시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소리쳐놓으면 북한에 남은 신청인의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신청인이 북한에 있을 그때 당시 한국에 먼저온 가족이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북한의 가족들이 하루밤 사이에 모두 없어진 일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 신청인은 사전의 아무런 통지나 허락없이 취재를 하고 신청인의 가족들을 위협에 빠뜨린 피신청인 측에 정신적인 피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건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0년 7월 9일까지 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신청인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이행지체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도록 하라.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사례 102

한 모텔에서 남녀가 동반자살 했다고 보도하면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성과 연령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서울조정981 손배청구
 신청인 : 고 ○ ○
 피신청인 : (주)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0. 6. 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강원 춘천시 ○○동의 한 모텔에서 남녀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업주 고 모(○○세)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춘천시 ○○동 일원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은 신청인 한 명이어서 이 보도를 보고 지인들과 주변인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운영하는 모텔의 이미지도 훼손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이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였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기사를 피신청인 연합뉴스로부터 전송받아 게재한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등을 대상으로도 조정을 신청(2010서울조정 982~985)했고,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이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하자 신청인은 청구를 모두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연합뉴스 : 『춘천 모텔서 또 남녀 연탄 동반자살(종합)』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내 용 : (춘천=연합뉴스) 이○○ 기자 = 7일 오전 11시18분께 강원 춘천시 ○○동의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박 모(28.서울 광진구) 씨와 박 모(19.여.춘천시) 양 등 남녀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업주 고 모(○○세)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고씨는 “퇴실시간이 지나도록 인기척이 없어 청소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남녀가 숨져 있었다”라고 말했다. 발견 당시 객실 안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 2장과 찢망 형태의 화덕이 있었고, 출입문과 창문은 비닐테이프로 밀폐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숨진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5시께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객실 내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박양이 올해 입학한 대학생황에 적응을 못해 휴학했다는 주변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십만 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춘천시 ○○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고○○이며, 피신청인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도하는 뉴스통신입니다.

피신청인은 2010년 6월 7일 <춘천 모텔서 또 남녀 연탄 동반자살(종합)>이라는 제목으로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한 모텔 3층에서 남녀 2명이 숨져있는 것을 업주 고모(○○세)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로 좁은 춘천사회에서 그것도 ○○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에겐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 일원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고씨로 나이가 ○○세인 사람은 신청인 하나로 주변인들은 다 알며 멀리있는 지인들까지 기사를 보고 전화를 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모텔의 이미지 훼손 및 영업에 타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검색불가)를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조정대상보도 삭제



사례 103

살해당한 신청인 어머니의 사체를 발굴하는 장면이 유족의 동의 없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0경기중재1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OBS경인TV(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10. 3. 1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신청인의 모친이 살해 암매장된 사건의 경위 및 범인 검거과정에 대해 다루면서, 뿌옇게 처리된 사체 발굴 장면과 신청인 모친과 피의자와의 관계, 모친의 생존 시 하던 일, 안면 및 상반신이 모자이크 처리된 모친의 전신사진, 생전에 모친이 신청인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 등을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에 모친의 살해 암매장 사건 보도에 관해 동의를 구한 바가 없고, 사체 발굴 장면을 보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며, 모친의 사진과 신청인의 문자 메시지 등이 노출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2010경기조정38)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정기일 심리전에 당사자가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동일 프로그램의 서두에 고인의 사생활 일부를 노출한 것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보도를 방영하라고 결정했다.

중재대상보도

OBS경인TV : 「경찰25시」 프로그램 '암매장 살인사건'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8일 23:00)

내 용 : ▷내레이션 : 지난 2월 경찰과 현장 감식반이 경북 어느 야산에 도착했다. 범행 현장으로 추정되는 이곳을 수색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리고 마침내 범행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암매장한 사체, 대체 누가 왜 이런 잔인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강력반 형사들의 수사력이 총동원 돼 사건에 대한 단서를 밝혀 나가기 시작했다 먼저 끔찍한 일을 당한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에 주력했다. 피해자는 40대 여성,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일까? 목졸려 살해된 피해자의 사체는 강제로 웅크려져 흙속에서 발견됐다.

▷형사 : 두 아들하고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지인들에게 돈을 좀 빌려주고 투자처를 찾아다니는... 뭐 그 정도 약간의 재력이 보이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내레이션 : 소식을 듣고 피해자의 아들이 경찰서를 찾았다.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된 것은 사흘전. 아들은 엄마로부터 석연찮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형사 : 평소 문자 메시지는 두세마디 밥 먹어라, 오늘 안가고 내일 들어가겠다. 간단한데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안된 후로 평소보다는 길게, 문자 메시지를 약 한 6~7줄로 길게 자세하게 문자를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 이건 분명 엄마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문자를 보낸거다 라고 의심을 한거죠.

▷내레이션 : 다른 사람에게 채권 서류를 전해주라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재산을 노린 주변인의 범행일까? 피해자의 주변인들과 접촉을 시도하던 중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형사 : 사건 발생 전, 약 4일 전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심도있게 10분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 이상하다...

▷내레이션 : 범행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는 친구를 만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했다. 내연남으로부터 4천만 원을 투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 : 22일날 정도에 가면 영천을 가면, 자금 세탁한 돈이 43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자고 하는데 만약 그 이후로 연락이 안되면 실종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거죠.

▷내레이션 : 돈을 내주지 않는다면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한 걸까. 그녀는 친구에게 내연남의 인적사항을 남겨두었다. 아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와 친구의 진술로 미루어, 범행은 내연남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형사 : 피해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통장의 입출금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21일날 입금되었다가 22일날 출금이 되었더라고요. 약 4천6백만 원 정도. 아, 이게 뭔가 혐의점이 있구나. 직감적으로 착안을 하게 된거죠.

▷내레이션 : 피해자가 사라진 직후, 하루동안 여러번에 걸쳐 인출된 현금. 내연남이 투자를 종용한 금액과 비슷했다. 현금을 인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 형사들은 해당 은행의 CCTV화면을 확보했다. 오늘 인출한 사람은 피해자일까. 아니면 피해자의 죽음과 관련있는 인물일까?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한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형사 : 녀석 같아 그렇지? 옷 색깔이랑... 잠바. 보라색. 패딩 잠바에 스포츠 머리.

▷내레이션 : 전혀 초조한 기색없이 여유를 보이는 남자. 그는 당당히 거액의 돈을 찾았다.

▷형사 : 수표, 현금 5만원권.. 당시 인출한 통장이 다른 사람의 통장에서 남자가 인출한 것으로 봐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내레이션 : 그자가 피해자의 내연남일까 피해자가 남겨놓은 내연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보기로 했는데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내연남이 CCTV에 포착된 바로 그자임이 확인됐다.

▷형사 : 특수강도하고 절도하고 사기, 있었습니다. 전과로 봐서는 실종사건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출동했죠.

▷ 내레이션 : 이미 여러차례 돈을 노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용의자. 사건 발생 이후 남자는 자취를 감추었다. 강탈한 피해자의 돈을 도피자금으로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역시 용의자의 집은 그가 돌아온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추적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후략)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OBS경인TV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프로그램(경찰 25시) 중 신청인 모친과 관련된 방송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중재신청이유

신청인은 지난 2월 살해, 암매장당한 피해자의 유족(아들)이며 피신청인은 지역 민영방송사입니다.

피신청인은 지난 3월 8일 <경찰 25시>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의 어머니와 연관된 살인 사건의 경위 및 범인 검거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사체를 발굴하는 장면이 유족의 동의없이 보도되었으며, 살아 생전 어머니가 찍은 사진이 공개되는 등, 사생활 침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록 사체를 그대로 보여준 것은 아니고, 옷가지와 커튼 등으로 싸여있는 모습이기는 하였으나 급하게 암매장 하느라 웅크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무 여과없이 공개한 것은 유족에게 크나큰 상처였습니다.

또한 바로 다음 장면에서 어머니의 살아생전 모습을, 비록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하나 전신을 다 보여줌으로 인해 해당 사건이 돌아가신 신청인의 어머니에 관한 사건임을, 고인과 유족의 주변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늦은 밤 우연히 TV를 보던 유족들이, 신청인의 어머니에 관한 사건임을 단박에 알아보았음은 물론이고, 생전의 어머니와 알고 지내시던 지인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치는 등, 매우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물론 극악무도한 범행의 경위와 범인 검거과정을 보도하는 것이 공익적인 보도를 위해서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암매장 당시의 사체의 모습을 유족의 동의없이 그대로 보여준다거나, 유족이 제공하지도 않은 살아생전의 사진을 노출하는 것까지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참혹하게 살해당하신 사건이 아직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유족으로서는 그 슬픔을 채 진정시키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방송을 통해 어머니의 사체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 사건을 대체 유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황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또한 보도과정에서 어머니의 평소 사생활, 예를 들어 피의자와의 관계라던가 살아 생전의 직업, 재산상황, 생전에 신청인에게 보내신 문자의 내용까지 유족의 동의없이 그대로 보도한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생전의 사진이나, 신청인에게 보내신 문자의 내용 등은 어머니의 실종 당시, 어머니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경찰에 제출했던 것인데, 어머니가 살해당하신 다음에 유족의 동의도 없이 방송사에서 공개해 버린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방송하기 전 또는 방송하기 직전이라도 유족에게 동의를 구했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늦은 밤 우연히 TV에서 어머니의 사체를 발견하고,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이 가슴을 쳐야 했던 유족의 심정은, 아마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생활을 침해당하신 어머니가 마땅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나, 고인이 되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언론중재법 제 5조의2 제 2항 및 3항에 의거, 유족(직계비속)인 신청인이 중재를 청구합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오니, 중재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사건 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0년 4월 5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2010년 3월 29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OBS경인TV “경찰 25시” 프로그램 서두에 청색 바탕에 흰색자막의 화면으로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는 시간동안 머물도록 보도한다.

이 유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OBS경인TV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경인방송 2010년 3월 8일자에 11시부터 방송된 “경찰 25시” 프로그램에서 ‘암매장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 모친 살해 암매장 사건의 경위 및 범인 검거과정을 방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모친이 살해 암매장 당한 사건에 대해 보도를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신청인측에 동의를 구한 바가 없고, 비록 사체를 발굴하는 장면을 뿌옇게 모자이크 처리하여 그대로 보여 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체발굴 모습을 보면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고인이 된 신청인 모친과 피의자와의 관계, 생존 시 하던 일, 안면 및 상반신이 모자이크 처리된 모친의 전신사진, 신청인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화면에 담아 보도하여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2010년 3월 11일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2010경기조정38)을 하였다가, 2010. 3. 18. 조정심리 1차기일 심리전에 당사자가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일반인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공익적인 의도에서 해당프로그램이 제작되어 방송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흉악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유족에게 동의를 구하고 보도하지 못하는 것이 통상 보도 형편상의 관례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를 하면서도 유족의 동의를 직접 구하지 못한 점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신청인 모친의 사건이 피신청인이 의도하는 공익성과 뉴스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때, 보도관행상 큰 오점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체발굴과정과 고인의 사진 및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한 부분은, 방송의 성격상 전개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가려 주었으므로 보도준칙 상 큰 결점이 있는 보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신청인 모친의 사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어 이를 대하는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 보도가 안 되었다면 겪지 않았을 고통을 준 데 대해 위로와 유감의 뜻을 방송을 통해 전달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신청인은 모친의 불미스러운 사인으로 인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의 유족만 모여서 장례를 치른 지 불과 십여 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가 됨으로써, 고인의 사인을 알지 못하던 인척과 지인들에게 보도를 통해 사인이 알려져 유족 및 지인들이 당혹스러움과 충격을 받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상처를 가라 앉히고 있던 유족들에게 언론조정 신청을 낸 이후에도 재방송이 되어 상처를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비록 언론의 입장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나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인 모친에 관한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유족들의 고통을 배려하지 않은 성급한 처사라고 생각하므로 방송으로 인해 유족이 받은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단하건대, 이 사건의 해당 방송을 검토해 볼 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흉악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어 방영되고 있는 해당방송의 공익성은 인정되는 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전개에 필요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모친과 관련한 대부분의 자료와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가려주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내보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 피신청인이 언론의 보도준칙을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상규상 공익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조명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처럼 보도의 대상자가 되어 그로 인해 크게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유감표명을 하는 방송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에 더하여 얼마간의 금전적 배상을 통해 이를 위자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사건의 보도 경위, 매체의 영향력, 방송프로그램의 성격, 보도시간대,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후속조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위자료 액수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과, 실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8.

〈별지〉

1. **제 목** : 고인 및 유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2.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2010년 3월 8일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안산의 여성 암매장 사건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고인의 사생활을 일부 노출한데 대해 고인 및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재결정 사항 이행결과

OBS경인TV : 「경찰25시」 프로그램 (2010년 3월 29일 23:00)

내 용 : 〈중재 결정서의 별지 참조〉



